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차량 운행제한 안내(신월여의지하도로, 서부간선지하도로)

1. 서울시 도로계획과-21595(2022.4.27.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구간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 오진입 사고로 인해 지하도로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어 차량진입 제한을 안내하오니,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진입제한 도로

- 신월여의지하도로, 서부간선지하도로

나. 진입(운행)제한 차량 안내

- 높이3.0m 초과차량, 총중량 3.5톤 초과 화물차량,
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

다.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

- 운수종사자 : 도로법 제113조, 제114조, 제117조
- 업 체 : 도로법 116조 (양벌규정)

※ 불 임 : 서울시 공문 및 각 도로법 조문 각 1부. [끝]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담 당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전무이사 박태환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22-98호 (2022.05.03) 접수 ()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